

건축위원회 심의의결조서

1/2

심의일자	2017.12.27(수)		
사업명/신청위치	신촌관광호텔 신축사업 / 마포구 노고산동 57-50외 5		
의결번호	2017-36-3	심의결과	조건부보고완료
[심의 내용] 경관+건축+교통 심의			
■ 아래 지적사항을 반영하는 조건으로 의결되었으며, 지적사항의 반영여부는 인허가권자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.			
■ 참고로 본 건축위원회 심의는 「경관법」 제28조 및 「건축법」 제4조, 「도시교통정비촉진법」 제17조에 의한 경관·건축·교통에 의한 건축 관련 기술적인 사항에 대한 심의로서 건축법 등 관련 법령에 적합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.			
〈 건축 분야 〉			
□ 건축계획			
○ 수평루버의 면은 향후 오염으로 인한 유지 보수가 어려울 것으로 대책 검토 바람.			
○ 개폐 가능한 객실 창의 높이는 사용자가 수월하게 사용할 수 있는 지 검토 바람.			
○ 공개공지가 설치된 필로티 하부 유효 높이(6M)에 맞게 도면 수정 바람.			
□ 구조			
○ Transfer Beam에 연결된 상부와 하부 기둥은 최소 1개층 이상 SRC구조로 보완 하기 바람.			
□ 방재			
○ 1층 직원출입구 관리실 앞 복도 유효폭을 넓혀 피난안전성 확보 바람.			
○ 중앙계단은 1층에서 로비로 연결되지 않고 직접 외부로 나갈 수 있도록 하고 외부 방향 출구 유효폭을 확대하기 바람.			
○ 제연용 샤프트가 협소하여 샤프트 면적의 확대가 요구되며, 제연용 송풍기를 회전 수 제어방식으로 적용하여 안전 성능 확보 바람.			
□ 환경			
○ 분절된 파사드에서 커튼월 입면으로 변경하면서 냉방에너지 부하가 크게 상승할 것으로 루버를 차용(돌출간격, 돌출길이를 고려)하는 등 적극적인 일사 차단 계획 검토 바람.			
- 계속 -			

2017.12.27.
서울특별시 건축위원회

건축위원회 심의의결조서

2/2

심의일자	2017.12.27(수)		
사업명/신청위치	신촌관광호텔 신축사업 / 마포구 노고산동 57-50외 5		
의결번호	2017-36-3	심의결과	조건부(보고)완료
[심의 내용] 경관+건축+교통 심의			
< 건축 분야 >(계속)			
<input type="checkbox"/> 조경			
○ ‘공개공지-1’은 녹지대 통합 및 확대, 대형목 식재로 건축물의 매스에 조화되는 식재와 경관 계획 바람.(장송 보아심기와 대형 낙엽 교목 틀짜기로 식재)			
○ ‘공개공지-2’의 필로티 내부 공간은 휴게 공간 분위기가 나도록 야외카페 분위기로 바닥 목재 데크 포장과 벤치를 설치하고, 북향을 고려하여 기둥에 입면 녹화 계획 바람.			
< 교통분야 >			
○ 기계식 주차 바닥면 색상을 차별화하여 계획 바람.			
○ 기계식 주차 보행자 동선을 고려하여 횡단시설 설치 바람.			
< 공통사항 >			
1. 친환경 및 에너지 절약계획 관련 사용승인 시 승인권자에게 아래 사항 적용 여부를 확인받으시기 바람.			
가. 녹색건축물 인증 : 우수(그린2)등급 이상			
나. 건축물에너지효율등급 인증 : 1등급 적용,			
다. 신재생에너지 설비 공급률 주거 7.13% 적용			
라. 1차 에너지소요량 기준(260kWh/m ² ·y)대비 40kWh/m ² ·y 이상 감축(신재생 에너지설비 성능 대체비율 완화 적용)			
2. 옥상에 설치되는 냉각탑, 급·배기구, 안테나 등 건축설비는 고층조망(SKY VIEW)을 고려하여 입면 및 상부에서 보이지 않도록 그릴 등을 설치하여 외관을 마감하시기 바람.			
3. 수돗물 재처리시설(중앙정수처리장치) 설치·가동은 깨끗하고 안전한 서울의 수돗물 아리수의 수질 저하는 물론 경제적인 손실과 에너지 과다사용, CO ₂ 발생으로 저탄소 녹색성장에 역행하는 “불필요한 시설”이므로 설치제한을 권장함.			
4. 다음 대상의 건축물의 경우는 빗물관리시설을 설치 권고(서울특별시 물순환 회복 및 저영향개발 기본조례 제12조).			
1) 대지면적 1,000m ² 이상이거나 건축 연면적 1,500m ² 이상의 건축물.			
2) 물순환 빗물관리시설의 세부계획은 ‘주택정비사업 빗물관리 가이드라인’을 참고하여 적용.			
5. 『서울특별시 유니버설디자인 도시조성 기본 조례』 제7조에 따라 건축물은 유니버설 디자인으로 설계·시공하기 바람. 끝.			

2017.12.27.
서울특별시 건축위원회